

6. 공제액 세부 내역		
구 분	중전(최초)내역(원)	변경내역
도시철도 또는 철도의 건설 및 개량 비용	원	원
지구·구역 또는 사업지역밖의 도로설치 비용	원	원
⑭공제액 총계	원	원

주 : 공제액 내역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함

7. 부담금 부과액

구 분	중전(최초)내역	변경내역
⑮부담금	원	원
- 주택부문 부과액	원	원
- 주택이외부문 부과액	원	원
공 제 액(⑭)	원	원
⑯경 감 률	()%	()%
최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액 [(⑭-⑮)×⑯]	원	원

주 : ⑯경감률은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함

<p>.....</p> <p>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부지무상대부 동의안 심사보고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width: 15%;">의안 번호</td> <td style="width: 15%;">908</td> <td style="width: 70%;">2001. 6. 재정경제위원회</td> </tr> </table> <p>1. 심 사 경 과</p> <p>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1년 6월 16일, 서울특별시장 제출</p> <p>나. 회부일자 : 2001년 6월 19일 회부</p> <p>다. 상정일자 : 제2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 (2001년 6월 25일 상정, 의결)</p> <p>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산업경제국장 김홍권)</p> <p>가. 제안이유</p> <p>○ 우리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중소기업협동 조합중앙회에서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 는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의 부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2001. 6.30일자로 만 료됨에 따라,</p>	의안 번호	908	2001. 6. 재정경제위원회	<p>○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여의도전시판매 장부지의 무상대부를 허가하여 우리시 중 소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 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에 의거 서 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임.</p> <p>나. 주요골자</p> <p>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부지를 중 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무상대부</p> <p>다. 무상대부 재산현황</p> <p>○ 명 칭 :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부 지</p> <p>○ 위 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3-1 일부 (구 안보전시장)</p> <p>○ 규 모 : 대지 2필지 26,562㎡(8,035평) ※시설물 : 3,913평(전시장 2,818평, 판매장 608평, 기타 487평)</p> <p>- 전시장 : 에어돔</p> <p>- 판매장 및 기타 : 가설건축물</p> <p>○ 대부기간 : 2001. 7. 1 ~ 2001. 12. 31까지</p> <p>라. 참고사항</p> <p>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p>
의안 번호	908	2001. 6. 재정경제위원회		

(갑종재산의 대부)

① 갑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

제15호.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 관할구역안의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또는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

② 갑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4호. 제1항제1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남중)

○ 여의도 중소기업전시장 부지는 95년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무상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로 99년 11월 시정개발연구원의 여의도지역 전략개발계획 용역결과에 따라 서울시가 여의도 부지 개발계획으로 2001년 5월 부지매각 임찰을 하였으나, 유찰되었고, 앞으로 11월말에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동 부지가 매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금년말까지 동 시설을 중기협이 계속 사용하게 하여 달라는 내용의 동의안으로,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의 전시용 시설부지로 매각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시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기한을 2001.12.31까지로 6개월 연장하는 것은 2001.12.31이후에도 매각이 지연되었을 경우 또 다시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절차상 어려움이 우려되며, 동의안 제출이 늦어져 지난번 기획예산실의 경우는 행자부 정원승인관계로 이해가 되나, 이번 산업경제국의 경우는 의회의 안전처리 절차나 전문위원의 사전검토에 시간적 제약에 심도있는 심의가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11명,

출석위원 8명 전원일치)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부지 무상대부동의안

서울시에서 부지제공 및 행정지원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시설설치 및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95.5.29 체결한 협정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2001.7.1부터 2001.12.31까지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동 부지를 무상대부하는 데 대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한다.

□ 무상대부 재산현황

○ 명 칭 : 여의도중소기업제품전시판매장 부지

○ 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3-1 일부(구 안보전시장)

○ 규모 : 대지 2필지 26,562㎡(8,035평)

* 시설물 : 3,913평(전시장 2,818평, 판매장 608평, 기타 487평)

(전시장 : 에어돔,

판매장 및 기타 : 가설건축물)

○ 대부기간 : 2001.7.1~2001.12.31까지

○ 대부조건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4항 등 우리시에 필요한 조건 부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4항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는 즉시 이에 응할 것

제2호 :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부목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목적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참고자료

□ 시설개요

○ 규모 : 대지 8,035평

건물 3,913평(전시장 2,818평, 판매장 608평, 기타 487평)

○ 설치 : '95.7~'96.7('96.8.16개장)

-서울시 : 부지제공(부지 무상사용승인),